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공개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령 대상을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및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확대함(제40조제1항).
-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27조의4)

안 제27조의4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고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 제공의 요청의 근거와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의 요청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소비자 정보의 목적 외 조회·이용 시 제재규정 마련

안 제27조의4제4항 전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구별과 계약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같은 항 후단에는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소비자 관련 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과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용도 조회·사용 금지의무는 내용상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 제2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소비자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용도 조회·사용 금지의무를 같은 조 제5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용도 조회·사용 금지의무만 규정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한 경우

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바, 개정안에 따른 목적 외 조회·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 법에서 처벌규정을 두어 금지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단순히 “조회”하는 행위는 법익 피해 정도 및 그 불법성에 차이가 있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할 경우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른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¹⁾의 목적 외 이용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참고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보·자료의 목적 외 ‘조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²⁾ 등 유사 입법례의 목적 외 열람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참고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의3 및 제48조의2).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전화번호·납입내역 등 소비자의 구별과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선수금의 납입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u> ⑤ <u>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⑥ (생략)	⑥·⑦ (생략)
<신 설>	제47조의3(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8조의2(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 미제공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안 제2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의 세부내용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 ----- ----- ----- ----- --.
1.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	1. ----- ----- -----

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제8항·제11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 제27조의2, 제27조의4제3항·제4항 -----
2. (생략)	2.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

다. 제공 정보 및 자료 요청 대상 명확화

안 제2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제공할 정보로 “소비자피해보상의 접수·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소비자피해보상의 접수·진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바, 안 제2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제공 대상 정보를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로 명확히 함.

그리고, 안 제27조의4제3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대상인 ‘관련 기관·단체의 장’의 범위가 포괄적인바, 그 범위를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금융감독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정하도록 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	---------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접수·진행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생략) 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소비자피해보상----- ----- ----- 5.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금융감독 관련 ----- -----, ----- ----- ----- -----.
--	---

그런데, 개정안은 보존의무의 중요한 사항인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보존기간의 최대기간과 그 기산점을 법률에서 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 등”이라 한다)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 동안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u>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① ----- ----- ----- ----- ----- <u>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까지</u> ----- -----.
② (생략)	② (생략)

3. 한도 초과 신용공여 절차 명확화(안 제33조제1항)

안 제34조의2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어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하이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은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안 제53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요건이 됨. 그러나,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³⁾와 다르게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전원”의 전제가 되는 “재적임원”의 기준과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요건을 유사 입법례 및 이사회에 권한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적임원”의 기준과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4)중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 감사 등과 이에 준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 상 집행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하되, 주식회사는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치도록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② (생략)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3)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④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그런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법전체의 체계 정합성 및 수범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제46조에 규정하거나, 제3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다른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과 현행 규정상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보칙에 모아서 규정하도록 정비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4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직원 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5.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안 부칙 제2조·제4조)

안 제31조의2제1항제3호는 공제조합이 최근 5년간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40조제1항제1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령 대상을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종전에 ‘최근 3년간 시정명령 후 1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⁵⁾에서 ‘최근 3년간 시정명령 후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 변경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3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정명령 등이 있던 경우를 처분기준이 되는 횟수에 포함할 것인지가 불명확한데, 일반적으로 횟수를 처분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에 따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한 것을 가중처분의 이유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⁶⁾, 개정법률 시행 전의 시정조치 등은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되, 종전 규정에서도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였던 거짓 등록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횟수를 산정하도록 함.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례 참조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부 칙 제2조(설립인가 취소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중전의 제31조제3항)에 따라 받은 시정명령이나 조치는 제3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부 칙 제4조(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반복한 같은 위반행위는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